

( 공 포 문 )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등명칭변경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1991. 3. 2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 육 감 김 상 준

서울특별시 조 례 제 2736 호



인제  
2014. 11. 10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등명칭변경조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등명칭변경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4347호, '91.3.8공포)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를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 "교육.학예에관한"으로, "교육구청장"은 "교육장", "교육구청"은 "교육청"으로 변경되어야 하므로 각종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명칭의 변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의 변경) 다음 각호의 조례중 기관명칭등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명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소속"으로, 제1조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소속"으로 한다.
2.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명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제1조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제5조중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하며, 제10조 제2항중 "교육위원회 및 그"를 "교육감"으로 하며,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한다.
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3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를 삭제한다.
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표창조례제명중 "교육위원회"를 "교육학예에관한"으로, 제1조중 "교육위원회및 교육구청에서"를 "교육감 및 교육장이"로, 제4조중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제5조 제2호중 "당 위원회 또는 교육계"를 "교육.학예"로, 제6조 제3호중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제7조 제2호중 "당 위원회와



결제  
1991. 2. 25

교육구청의"를 "교육.학에에관한"으로, 제10조 제1항중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제11조 제1항중 "교육위원회및 교육구청"을 "교육감소속및 교육청"으로, 제2항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소속"으로, 제3항중 "교육구청"을 "교육청"으로 하고, {별지} 제1,2,3,4호 서식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한다.

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명 및 제1조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소속"으로 한다.
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여비조례 제명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소속공무원의"로, 제1조중 "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를 "교육감소속"으로 한다.
7.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직무대리 조례 제명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하고, 제1조중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하며, "도의 교육위원회 직제"를 "도의 교육기관 직제"로 한다.
8. 서울특별시교육.학에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제2조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하고 제3조 제2항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소속"으로 하며, 제6조중 "교육위원회에"를 "교육감에게"로 한다.
9. 서울특별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제2조 및 제3조중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한다.
10.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 제1조중 "교육위원회에"를 "교육감소속 학에"로 하고, 제12조중 "교육위원회에서"를 "교육감이"로 한다.
11. 서울교육원설치조례 제1조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한다.
12.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상조례 제명 및 제1조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한다.



- 13. 서울특별시중학교 입학자 격고등학교 입학자 격및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제1조중 "교육위원회가"를 "교육감"로 제2조중 "교육위원  
회는"을 "교육감은"으로 한다.
- 14. 서울특별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제3조중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를 삭제하고, 제4조중 "교육구청"을 "교육청"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중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를 삭제하고,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교육구청"을 "교육청"으로 한다.
- 15. 서울여학생생활교육원설치조례 제1조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한다.
- 16. 서울학생교육원설치조례 제1조중 "교육위원회산하"를 "교육감소속하"로  
한다.
- 17. 서울특별시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 실습소설치조례 제3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를 삭제하고, 제7조중 "교육위원회에서"를 "교육비특별회계"에"  
로 한다.
- 18. 서울과학교육원설치조례 제1조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한다.
- 19.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 제4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를  
삭제한다.
- 20.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제3조 및 제7조중 "교육위원회"  
를 삭제한다.
- 2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 제명중 "교육위원회"를 삭제  
하며, 제1조 및 제3조 제2항과 제3항중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를 삭제  
하고, 제7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를 "사회교육과"로 한다.  
제8조중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한다. ~~103~~
- 22.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사회단체등록에관한 수수료징수조례 제명중 "교육  
위원회"를 "교육.학에에관한"으로 한다.

Faint, illegible text at the top of the page, possibly bleed-through from the reverse side.

Faint, illegible text below the top section.

Faint, illegible text in the middle section, partially obscured by the circular stamp.



Faint, illegible text in the lower middle section.

Faint, illegible text at the bottom of the page.

23. 서울학생수련장설치조례 제1조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한다.
24.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설치조례 제1조중 "교육위원회산하"를 "교육감 소속하"로 한다.
2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 제명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소속"으로, 부칙 제2항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하고, {별표 2} 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소속기관"으로 한다.
26. 서울특별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제1조중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 각 교육구청에"를 삭제하고, 제2조중 "교육위원회"를 삭제하고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교육구청"을 "교육청"으로 하며, 제4조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를 삭제하며, 제3항중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교육구청"을 "교육청"으로 한다.
27.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제1조중 "교육위원회산하"를 삭제하고, "교육구청"을 "교육청"으로 제3조중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교육구청"을 "교육청"으로 하고, 제7조 제1항중 "교육구청"을 "교육청"으로 한다.
28. 서울특별시중·고등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중 "교육위원회"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로 한다.
29.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설치조례 제1조중 "교육위원회관하"를 "교육감소속하"로 한다.
30.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거조례 제1조중 "교육위원회가"를 "교육감이"로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를 "다만 서울특별시"로 하고 제5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를 삭제하며 동조 제2항중 "교육위원회"를 "교육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적용하고,  
1991년 4월 30일자로 폐지한다.

부속감

